

#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1인,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다.

1. 금연, 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
2.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
3.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
4.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

제4조 (회의)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,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.

③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 (간사) 협의회의 사무에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방문보건계장으로 한다.

제6조 (임무)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 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7조 (수당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